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안 번호	21084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 : 한미전략투자공사

나. 채권자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소유자

다. 발행액 : 美달러 기준 70억달러 이내

(원화 및 美달러 外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증액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발행시기 : 2027년 중

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채정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한미전략투자공사
2. 채 권 자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소유자
3. 발 행 액 : 美달러 기준 70억달러 이내
(원화 및 美달러 外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4. 보 증 액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6.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8. 상환재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9. 자금사용계획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10. 발행시기 : 2027년 중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참 고 사 항

1. 관계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제4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3. 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미전략투자채권 사업계획

□ 한미전략투자공사

- 설립근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약칭: 한미전략투자법, 2026. 6. 18. 시행)
- 설립목적 :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지원
- 자본금 현황 : 법정 자본금 2조원
 - 납입자본금 및 출자자('26.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출자기관	정부	합계
금액(억원)	10,933	10,933
지분율(%)	100.0	100.0

□ 한미전략투자기금

- 설치목적 : 전략적 투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에 설치
- 지원분야 :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전략적 산업 분야
 -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
- 지원대상 :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선정된 대미투자(2천억달러) 및 조선협력투자(1천500억달러) 사업
- 지원방식 : 출자, 투자, 대출, 보증 등

○ 기금의 재원조성 규모 추산

- ('27년 예상 집행수요)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연간 집행한도인 200억달러의 집행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조선협력투자는 공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보증 방식의 지원을 가정

- ('27년 필요 국가보증 규모) '27년 예상 집행수요, 별도 조달재원 등 고려시 필요 국가보증규모는 약 70억달러로 추산

< 기금 집행수요 전망 >

(단위 : 억달러)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총계
대미투자	200	200	200	200	800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 >

(단위 : 억달러)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자금집행수요 (A)	200	200	200	200
별도 조달 재원 (B)	135	135	135	135
필요자금 (C)=(A)-(B)	65	65	65	65
유동성 대응 자금 (D)	5	5	5	5
채권한도(E)=(C)+(D)	70	70	70	70

- '27년 한미전략투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0억달러 한도의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달러)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70
별도 조달 재원(위탁자산 등)	미 정	-
계		70

- (기금재원의 용도) 한미전략투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도 내 사용